## $\triangle$ $\triangle$ 중 학생 사망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 [3심]	사건유형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명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9명
판결선고일	[3심]2020. 1. 16. 심리불속행기각	비고	[1심]2018. 4. 27. 원고일부승 [2심]2019. 8. 22. 원고일부승
사건개요	<ul> <li>○ 2016.10.17. ◇◇중 학생 자살 사건 발생</li> <li>○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으로, △△중학교에서의 제1 가해행위, ◇◇중학교에서의 제2 가해행위로 결국 자살에 이르렀는바,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가해자와 부모들,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li> </ul>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O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약	<ul> <li>○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li> <li>각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사건 제1,2 가해행위는 △△중학교와 ◇◇중학교의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생활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위 각 가해행위가 망인과 위 피고들이 △△중학교와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의 발생에는 △△중학교와 ◇◇중학교 소속 교사들의 지도·감독의무 위반 또한 개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li> <li>○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그러나 각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교와 ◇◇중학교 소속 교사들이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로 인한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학교와 ◇◇중학교 소속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li> </ul>		
2심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